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평가데이터㈜

2. 조치일 : 2025. 2. 14.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고객평가 활용자료의 보관·관리 미흡

회사는 고객제출자료 관리 관련 내규*에 따라 고객인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전산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 「고객제출자료 관리지침」 제2조에는 고객제출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저장·관리토록 규정하고 「고객제출자료 운용기준」 제5조는 고객제출자료의 범위와 활용 기준을 규정

조사·평가 과정에서 기업 평가를 위해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득한 공개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장 및 관리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수집·보관된 자료임에도 다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복 활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기업에 대한 조사·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고객제출자료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기업 평가자료의 보관·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업무 이해상충 내부심사 미흡

회사는 이행상충방지 관련 내규*에 따라 평가일(상품생성완료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피평가기관에 대해 조회상품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정되는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해상충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이해상충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 「이해상충방지지침」 및 「내부심사지침」

** 1) 심사대상 여부 및 이해상충여부 확인요청 기한 준수여부, 2) 조회상품 가입사유 및 최근 조회상품 활용이력, 3) 조회상품 가입고객의 최근 재무상황 등 신용등급 결정과 관련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러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점검 항목과 적정성 판단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상충 여부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조회상품 가입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보되는 등 내부심사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영업업무와 관련된 이해상충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항목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영업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